**합 의 서**

**아래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(이하 ‘본 합의’)한다.**

**1.** **사고내용**

 **사고일시** :

 **사고장소** :

 **가해차량** :

 **가해자인적사항** 성명 : 주민등록번호 :

 주소 :

 **피해자인적사항** 성명 : 주민등록번호 :

 주소 :

**2.** **합의내용**

 **합의금액** : 金 원

 **합의사항** : (1) 가해자는 *‘*법률상(재산상) 손해배상금의 일부’로서 위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.

 (2) 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.

 **채권양도** : (1) 위 합의금은 ‘법률상(재산상) 손해배상금의 일부’로 지급된 것이므로, 가해자는 위 돈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는바, 가해자는 위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.

 (2) 본 합의가 이루어진 즉시, 가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. 만약 이를 어길 시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.

 (3)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였으므로,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, 피해자 외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 만약 이를 어길 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 보험금 청구권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.

**3.** **기타사항**

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확실하고자 본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 2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**4.** **첨부서류**

 (1) 가해자 인감증명서 1부

 (2) 피해자 인감증명서 1부

 (3) (대리인이 합의할 경우)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**20 년 월 일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가해자** | **성명** : (인)  |
|  | **주소** :  |
|  | **주민등록번호** :  |
|  | **연락처** :  |

|  |  |
| --- | --- |
| **피해자** | **성명** : (인)  |
|  | **주소** :  |
|  | **주민등록번호** :  |
|  | **연락처** :  |